

공 고

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23대 회장 재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- 다 음 -

1. 회장(입)후보자 등록 기간

- 2021.01.07.(목)~08(금) 18:00까지/ 2일간 /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(협회 회의실)
※ 자세한 내용 회장선거 안내 공고문 참고

2. 회장(입)후보자 기호추첨 및 등록 공고

- 기호추첨 일시 및 장소

: 2021. 01. 08(금) 18:00 /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(협회 회의실)

-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

: 2021. 01. 08(금) /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및 부산시체육회 홈페이지

※ 단, 등록된 입후보가 1명일 경우 부산광역시축구협회 규약 제21조 제9항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처리예정

3. 회장선거(투표시간)

- 일 시 : 2021. 01. 13(수) 10:00 ~ 16:00

- 장 소 :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

/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투표결과(당선자발표) : 선거종료 후 개표 결과 현장발표

4. 당선자 공고

: 2021. 01. 13(수) /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

2021년 01월 04일

부산광역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

회장선거 안내

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23대 회장 재선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장소

- 등록기간 : 2021. 01. 07(목) ~ 08(금) 18:00 限 / 2일간
- ※ 접수시간 : 09:00 ~ 18:00 限
- 등록장소 :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(협회 회의실)
(주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-32 사직실내체육관 207호)
- 등록방법 : 임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

나. 회장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

- 2021. 01. 08(금) /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및 부산시체육회 홈페이지
- ※ 단, 등록된 입후보가 1명일 경우 부산광역시축구협회 규약 제21조 제9항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처리예정

다. 후보자 등록서류

-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
- 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각 1부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
-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
- 징계사실 유무확인서 및 체육단체 사임·퇴임증명서 각1부
- 기탁금 납입 증빙서류(입금증 등)
- ▶ 기탁금 : 금 오천만원, 50,000,000원
- ▶ 계좌번호 : 519-20-111306 / 은행 : SC스탠다드차타드(SC제일은행)
예금주 : 김기호
- ▶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 명의로 입금 한 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 제출.
단,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현금(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)으로 납부가능
- ※ 기탁금은 회장선거 결과에 따라 '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' 제27조에 의거 처리됨을 참고바랍니다.

라. 선거 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21. 01. 13(수) 10:00 ~ 16:00
- 장 소 :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
/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부산광역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

부산광역시축구협회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

관련근거 :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(별첨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 <삭제 2019.09.10>

4. <삭제 2019.09.10>

5. <삭제 2019.09.10>
6. <삭제 2019.09.10>
7. <삭제 2019.09.10>
8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, 시종목단체 및 구·군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19.09.10.>
9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, 시종목단체 및 구·군종목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「형법」제314조 및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19.09.10.>
10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, 시종목단체 및 구·군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19.09.10.>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<신설 2019.09.10.>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<신설 2019.09.10.>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19.09.10.>
11. 국회의원
12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<개정 2018.09.10.>
13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2019.09.10., 개정 2020.11.12.>

